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594호
- 발 의 자 : 김태호 의원
- 발의일자 : 2021년 08월 11일
- 회부일자 : 2021년 08월 18일

2. 제안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9조에서 태권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기원은 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 주무부서의 혼재로 태권도 진흥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태권도 종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태권도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한 태권도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장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의 필요성

- 정부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을 별도로 제정(2007.12.21.)하고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2018.4.17.)함.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선정하여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등 태권도 재도약을 위한 내외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동 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인 태권도법은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¹⁾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 「태권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1) 이를 근거로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 태권도공원이 조성된(2014. 4.) 전라북도만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시행(2015.12.) 중이며 그밖에 경기도 구리시·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서구는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중임.

-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태권도 종목 진흥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위치한 국기원의 관광명소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필요성이 인정되며,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체육진흥에 관한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제정조례안은 「태권도법」,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권도 종목 육성·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안 제1조(목적)**에서 서울특별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태권도법」 제2조에서 사용한 용어를 준용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관련 법령

- 「태권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경기·연구·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안 제3조(책무)**에서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태권도법」 제8조의 태권도단체·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음.

관련 법령

- 「태권도법」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태권도시설로 역삼문화공원 내 위치한 국기원이 대표적임. 국기원 건물은 '74년 준공 후 기부채납되어 현재 서울시 소유이고 관리사무는 강남구청장에게 위임된 상태임(재산관리관: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위임관리관: 강남구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그간 국기원 시설 보수지원 요청에 대해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자치구 사무임을 이유로 미지원 해왔으며(붙임 2 참고) 리모델링 사업은 체육 관련 사무와 밀접하므로 관련 부서(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옴.

그러나 관광체육국은 국기원은 공원 내 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적용을 받아 각종 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고 재산관리관

이 푸른도시국이므로 시설 노후화 관련 보수비용 지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음.

다만 현행 「태권도법」 제8조를 근거로 민법상 특수법인인 국기원을 태권도시설이 아닌 태권도단체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시 조례의 명문화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계획의 수립)**에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제1항에서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팀의 육성·지원,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 및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함.

현재 전문체육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해 서울시(일반)와 서울시교

육청(학생)으로 정책과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생선수가 실업 팀 등 전문체육 선수로 성장하는데 상당부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향후 태권도 종목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업하여 전 종목에 걸쳐 효율적인 학생선수 육성과 학생체육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 생활체육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 안 제7조(홍보 등)에서 태권도 보급·진흥 확대를 위한 홍보, 행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표창)에서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종합검토의견

- 태권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 선정 및 국기(國技) 지정을 계기로 2022년까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내·외 수련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한국 문화의 대표 콘텐츠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정체와 리더십 위기에 여러 차례 직면하였음.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서 「태권도법」,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의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태권도 종목에 대한 정책 완성도를 높여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유래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지혜	02-2180-8117

**의안번호
2594**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태호 의원	2021. 8.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단체·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제3항) ○ 시장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 규정(안 제6조) ○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 규정(안 제7조)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8.11. 김태호 의원 발의 ※(찬성)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이종환, 최영주, 황규복 의원(9명) 		
부 서 검토의견	<p>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p>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자체장의 태권도 진흥을 위한 책무 및 국기원 등 태권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 국기(國技) 태권도의 진흥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에 동의함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홍성수(☎2133-2677) 담당 김병모(☎2133-2678)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I·SEOUL·U
이·서울·유**서울특별시**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역삼문화공원 내 국기원 건물 보수 관련 회신

1. 강남구 공원녹지과-27140(2019.10.16.)호로 역삼문화공원 내 국기원 건물 보수 정비 예산 확보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역삼문화공원은 국기원 등 기존 공원시설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일명)태권도 성지 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세분변경하고 국기원 성지화사업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습니다.

3. 본 사업은 귀구에서 역삼근린공원 활성화방안으로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공원조성 계획으로 전면 리모델링 계획(재원조달:국기원)된 국기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정비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의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 후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국기원에서 내부사정으로 국기원 명소화 사업 전면 취소 통보한 바 귀구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수탁관리자가 관리대상 공원시설물인 국기원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장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백담당

박철수

공백조성과장

연일 10/2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과-13476 () 접수 ()

우 04524 서울특별시 송파 부교로 21, 9층(부교동, 더빅스제) / http://www.seoul.go.kr
인시서울발달

전화 02-2133-2075 /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붙임 3

태권도 관련 서울시의 비영리 법인·단체 등록현황

※ 서울시 홈페이지 민간단체 및 법인 현황자료(법인·단체명 검색 기준)

▶ 태권도 관련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

연번	허가일자	법인명	주관부서
1	2021-02-08	사단법인 대한스피드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	2021-02-01	사단법인 대한민국태권도국제협력단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	2020-04-06	사단법인 세계올림픽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	2020-03-18	사단법인 대한민국태권도시범문화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5	2019-11-27	사단법인 실버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6	2019-11-15	사단법인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7	2019-10-16	사단법인 국제청소년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8	2019-05-31	사단법인 세계온라인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9	2018-12-18	사단법인 세계한무관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0	2018-10-11	사단법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1	2018-01-22	사단법인 대한태권도디펜스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2	2017-10-18	사단법인 태권도산업표준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3	2017-08-25	사단법인 한국태권도공연예술원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4	2017-06-26	사단법인 세계무예태권도총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5	2017-05-24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6	2017-03-02	사단법인 세계생활체육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7	2016-08-03	세계태권도연합재단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8	2011-12-27	사단법인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9	2016-02-04	사단법인 세계키즈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0	2015-12-23	사단법인 태권도지도관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1	2015-09-08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2	2014-11-07	생활체육세계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3	2014-04-18	지구촌태권도봉사단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4	2013-09-11	(사)국제태권도선교연맹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5	2013-09-04	한국여성태권도문화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6	2013-05-01	사단법인 아시아대학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7	2012-04-05	사단법인 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8	2011-07-13	사단법인 세계경찰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9	2008-07-24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0	2008-05-21	프로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1	2007-12-06	국제태권도세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2	2007-12-05	세계태권도진흥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3	2007-12-03	중앙아시아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4	2007-02-21	세계태권도연수총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5	2007-01-10	아이티에프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6	2006-10-10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7	2006-11-24	세계프로태권도총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8	2006-11-30	세계프로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9	2006-06-16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0	2006-06-05	대한민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1	2006-03-08	세계태권도총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2	2006-03-03	국제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3	2005-11-15	대한민국태권도종합무예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4	2005-07-19	세계프로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5	2005-04-25	코리아세계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6	2004-10-07	대한국기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7	2004-04-09	한국태권도교육개발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8	2004-04-09	세계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9	2003-11-28	한국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50	2003-05-09	왕호태권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51	2003-03-20	대한무학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52	2002-11-15	세계태권도선교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53	2001-12-04	대한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54	2001-09-06	세계태권도청소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55	1990-12-26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태권도 관련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연번	대장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1	2018-01-26	(사)한국여성태권도문화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	2017-06-08	대한무예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